#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34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배준영·구자근·강대식

강선영 · 김형동 · 이종배

김소희 • 박준태 • 이성권

김종양 의원(10인)

### 제안이유

공유재산은 2023년말 기준 1,060조원 규모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산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유재산특례가 과도하게 신설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하지만 국유재산의 경우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특례를 제한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외 개별법을 통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할 수 있어 공유재산특례는지난 10년간 국유재산특례 대비 약 5배가 증가하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원하지 않아도 공유재산특례가 신설되거나, 국유재산 특례는신설되지 않고 공유재산특례만 신설되는 불형평한 사례도 발생하고있음.

이에 공유재산특례의 과다한 신설을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이 통일성 있게 특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특례의 정의(안 제2조)

'공유재산특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양여, 사용허가·대부와 사용료·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정의함.

나. 공유재산특례의 제한(안 제4조)

'공유재산특례'는 별표에서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수 없도록 하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수 없도록 하며, 공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별표에 따르도록 함다.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안 제5조)

공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공유재산 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공유재산특례 목적의 공익성, 경제성, 요건의 명확성 및 존속기간의 적절성 등 공유재산 특례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라.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등에 관한 심사(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 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 재산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의 타 당성을 심사하도록 함.

#### 마. 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특례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고, 운영 방식 또는 절차가 적절하지 아니 하거나 공유재산특례의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특례의 폐지를 위한 관련 법 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바. 공유재산특례의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 립하도록 함.

###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르지 아니한 공유재산 의 영구시설물 축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0조제1 항에 따르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양여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31조 또는 제43조의9에 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사용허가등"이라 한다)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32조제1항, 제34조, 제43조의7제1항 및 제43조의8에 따르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대체 시설을 제공(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가로 공유재산의 양여, 장기사용허가 등을 하거나 사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의 양여, 점용허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 다. 「도로법」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마. 「소하천정비법」
  - 바. 「어촌・어항법」
  - 사. 「자연공원법」
  - 아. 「하수도법」
  - 자. 「하천법」
  - 차. 「항만법」
- 제4조(공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공유재산특례는 별표에서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 ③ 공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공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1. 공유재산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할 것
  - 2. 공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 3. 공유재산특례의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 4. 공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 제6조(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이하 이 조에서 "공유재산특례신설 등"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유재산특례신설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유재산특례 신설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공유재산특례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특례 신설등이 제5조 각 호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공

유재산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공유재산특례신설등이 제5조 각 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특례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유재산특례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운영 방식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유 재산특례의 폐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할수 있다.
  - 1. 공유재산특례의 운영 방식 또는 절차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2. 공유재산특례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유재산특례의 폐지 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방안이나 공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

- 는 제도의 신설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1 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공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특례 종 합계획(이하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에는 공유재산특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양여의 용도 제한) ①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받은 자는 그 재산을 양여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양여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권한의 위임) ① 제7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유재산특례

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은 이법 시행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연 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여의 용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재산을 양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 이 법에 따른 공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연번	공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2. 12. 31.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7조, 제79조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2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사용료등의 감면	2024. 12. 31.
	관한 특별법」 제20조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2. 12. 31.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28. 12. 31.
	A11011, A1111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시	2032. 12. 31.
		설물축조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40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2. 12. 31.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11	「공연법」 제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1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6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2. 12. 31.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15	「관광진흥법」 제7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6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	2032. 12. 31.
	특별법」 제19조 	용허가등	
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9	「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20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2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	2032. 12. 31.
2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용허가등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2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제11조의9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시 설물축조	2032. 12. 31.
24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2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시 설물축조	2032. 12. 31.
26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양여 및 영구시설물축조	2032. 12. 31.
2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양여	2032. 12. 31.
28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3조,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2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9조, 제31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2032. 12. 31.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31	「국회사무처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3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4조, 제127조, 제13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2. 12. 31.
3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3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3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36	「노인복지법」 제5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37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3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			
39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37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40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41	「농촌진흥법」 제3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4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43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4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45	「도서관법」 제3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46	「도시개발법」 제66조, 제69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2. 12. 31.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61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 101조(양여)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2. 12. 31.
	^  991, ^  1001, 1011 (8°¶)	가등, 영구시설물축조 및 양여	
4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0조의2, 제49조, 제54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2. 12. 31.
	^  305 2, ^  495_, ^  945_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4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2. 12. 31.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50	「도시철도법」 제11조	양여	2032. 12. 31.
5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52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53	「독립기념관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5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5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양여	2032. 12. 31.
5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2. 12. 31.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5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7조		
58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5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L			

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장기 사용허가등 및 영구시	2032. 12. 31.
		설물축조	
6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6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63	「법률구조법」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6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4,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2. 12. 31.
	제19조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65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2032. 12. 31.
	제15조의2, 제24조의3	사용허가등	
6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제55조		
67	「사립학교법」 제3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6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시	2032. 12. 31.
		설물축조	
69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7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7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7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영구시설물축조	2032. 12. 31.
7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시	2032. 12. 31.
		설물축조	
7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3조,		2032. 12. 31.
	제38조, 제38조의6, 제46조의6, 제46조의7, 제46조의8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7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시	2032. 12. 31.
	제22조의8, 제28조의3, 제34조	설물축조	
7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77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2. 12. 31.
	제46조, 제58조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78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제17조의2		02.
7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80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8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8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		
83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84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2032. 12. 31.
		사용허가등	
85	「스포츠클럽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8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2. 12. 31.
		가 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8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46조의3		2032. 12. 31.
88	「아동복지법」 제6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8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33조		2032. 12. 31.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9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9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9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4조	장기 사용허가등 및 영구시	2032. 12. 31.
		설물축조	
9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여	2032. 12. 31.
94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9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제13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2. 12. 31.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9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97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9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9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10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L		J	

10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제22조		2032. 12. 31.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102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0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04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0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06	「전시산업발전법」 제26조	장기 사용허가등 및 영구시	2032. 12. 31.
		설물축조	
1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의2,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40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2. 12. 31.
	122-12, 121-12, 120-3, 120-3, 120-3, 120-3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10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 제165조, 제183조, 제222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2. 12. 31.
	제261조	가등, 양여 및 영구시설물축조	
11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2	양여	2032. 12. 31.
1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양여	2032. 12. 31.
1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1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 시설물축조	2032. 12. 31.
11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1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17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1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1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2. 12. 31.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12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2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8조		2032. 12. 31.
		사용허가등	

1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2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2. 12. 31.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124	「청소년 기본법」 제55조, 제5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26	「초지법」 제17조,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시	2032. 12. 31.
		설물축조	
127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2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2. 12. 31.
	/III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1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2. 12. 31.
	^  11.±.~ 0	가등 및 양여	
13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6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2. 12. 31.
	1000	가등 및 및 영구시설물축조	
13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양여	2032. 12. 31.
133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 허가등	2032. 12. 31.
13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3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2032. 12. 31.
		사용허가등	
136	「한국연구재단법」 제1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37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3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3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4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4조	양여	2032. 12. 31.
141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14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14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2029. 12. 31.

146   「항만공사법」 제27조	<ol> <li>9. 12. 31.</li> <li>9. 12. 31.</li> <li>2. 12. 31.</li> <li>9. 12. 31.</li> <li>9. 12. 31.</li> <li>2. 12. 31.</li> </ol>
설물축조  147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3.  14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사용료등의 감면 2023.  149 「해양환경관리법」 제10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3.  1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3.  지13조의2, 제13조의3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15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시 2033.  설물축조  15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연구시 2033.	2. 12. 31. 9. 12. 31. 9. 12. 31. 2. 12. 31.
147	9. 12. 31. 9. 12. 31. 2. 12. 31.
특별법」 제20조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14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사용료등의 감면       202         149       「해양환경관리법」 제10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         1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제13조의2, 제13조의3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15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시설물축조       203         15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         15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	9. 12. 31. 9. 12. 31. 2. 12. 31.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가용료등의 감면   2025   148	9. 12. 31. 2. 12. 31.
제18조   149 「해양환경관리법」 제10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2   1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2   제13조의2, 제13조의3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15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시 2032   절물축조   15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2   2032   2032   2032   2033   2	9. 12. 31. 2. 12. 31.
1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2033 기능 및 영구시설물축조       15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시 2033 설물축조       15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3 가능 기관 및 환경찬업 지원법」 제10조       15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3 가능 기가 사용 2033 가능 기가 가능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3 가능 기가 가능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3 가능 기가능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3 가능 기가능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3 가능 기가능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3 가능 기가능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3 가능 기가능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3 가능 기가능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3 가능 기가능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3 가능 기가능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3 가능 기가능 및 환경찬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3 가능 기가능 및 환경찬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3 가능 기가능 및 환경찬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3 가능 기가능 및 환경찬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3 가능한 가능한 기가능 및 환경찬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3 가능한 가능한 기가능 및 환경찬화적 가능하는 및 환경찬화화적 가능하는 및 환경찬화화적 가능하는 및 환경찬화화적 가능한 기관화화화 기관화화화 기관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	2. 12. 31.
제13조의2, 제13조의3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15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시 2033 제46조 설물축조 15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3 15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3	
15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시 2035, 제46조       15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5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5	
제46조 설물축조 15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3 15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3	
15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0       15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0	2. 12. 31.
15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2	
	9. 12. 31.
법률 제11조의3	2. 12. 31.
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15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2. 12. 31.
15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	2. 12. 31.
156 「광주과학기술원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5	2. 12. 31.
15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3	9. 12. 31.
15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2032	2. 12. 31.
조치법」 제21조 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15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0	9. 12. 31.
160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0	9. 12. 31.
161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2020   특별법」 제11조	9. 12. 31.
1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9. 12. 31.
16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양여 2032	2. 12. 31.
	2. 12. 31.
제28조 설물축조	12. O1.
165 「농어촌정비법」 제112조 양여 2032	2. 12. 01.

16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가등, 영구시설물축조 및 양여	2032. 12. 31.
16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68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35조, 제36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 가등 및 영구시설물축조	2032. 12. 31.
169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70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7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72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73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